

주주여러분께

##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4월 11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6,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 차 발행가액: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 \text{ 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 [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2) 2 차 발행가액: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 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 \text{ 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5-15 조의 2 에 의거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text{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 \text{ 차 발행가액}, 2 \text{ 차 발행가액}], \text{기준주가의 } 60\%\}$$

5. 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05월 15일(예정)
6. 청약방법
  - (1) 구주주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

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 9 조 제 4 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청약주식의 단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 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1 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 주당 0.2 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 주 미만은 절사)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0 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00 주 이상	10,000 주 이하	1,000 주 단위
10,000 주 초과	50,000 주 이하	5,000 주 단위
50,000 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 주 단위
100,000 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 주 단위
500,000 주 초과	1,000,000 주 이하	100,000 주 단위
1,000,000 주 초과	5,000,000 주 이하	500,000 주 단위
5,000,000 주 초과시		5,000,000 주 단위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9.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3 년 06 월 21 일 ~ 2023 년 06 월 22 일(2 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3 년 06 월 26 일 ~ 2023 년 06 월 27 일(2 일간)

10. 청약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1.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 년 05 월 15 일 예정) 18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3868388017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3 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50,000 주 이하(액면가 500 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2.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3년 06월 29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3.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3년 06월 29일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4. 주금 납입 예정일 : 2023년 06월 29일
15. 신주 배당 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6.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인수비율 : 100.0%)
17.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가산IT종합금융센터
18.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이다.
  -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6월 02일 ~ 2023년 06월 09일(5영업일간)
  -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된다.
  -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주)
19. 상장예정일 : 2023년 07월 14일
20. 기타사항
  -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3년 05월 16일부터 2023년 05월 22일까지로 한다.
  -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3년 04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

주식회사 케이이씨

공동대표이사 이종홍, 이태선, 강래훈